

# 2021년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8.(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78건(안건번호 제2021-14156호~1459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4156호는 온라인쇼핑몰 내 광고 사진이 권리자에 의하여 신고된 건으로, 해당 사진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게시자의 소명 등 없이 일률적으로 시정권고할 경우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따라서 대심제 구조가 보장되는 권리자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14157호는 외국 교과서와 해설서를 각 무단복제하여 제공하고 있는 건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4158호~14163호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만화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건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4164호~14165호는 방송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카페에 게시한 건으로, 권리자의 허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용형태 또한 공정이용의 여지가 있어 저작권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운 등 일률적인 시정권고가 게시자의 영업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14166호~14182호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2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67건(안전번호 제2021-305호~371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53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14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개 안건(1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2호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이 타당함.
- B 위원: 회의록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음. 제2호 안건 비공개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D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7쪽~1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7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14156호~14598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15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 ☆☆☆☆☆☆☆☆☆에서 '★★★★★★★★★★'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촬영하고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제시하면서)먼저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사진은 그 저작물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제품 사진이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민원인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당 안전과 같은 경우 권리자(민원인)가 직접 민·형사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부결 의견을 드림.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415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저작물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쉽지 않음. 사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불분명하고 사진 저작물 독자적으로 합법시장을 형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B 위원: 온라인쇼핑몰 내 광고 사진이 권리자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해당 사진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 D 위원: 게시자의 소명 등 없이 일률적으로 시정권고할 경우 영업활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415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게시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2개 어문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복제·전송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
- A 위원, D 위원: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5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4158호~1416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총 6건의 만화 저작물을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각 저작물당 판매 금액과 제공 회차는 검토보고서 16쪽에 표로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4158호~141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채증자료에서 불법사이트 워터마크가 찍힌 것을 확인함.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만화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해당 안전들은 모두 데드카피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가결함.
- C 위원: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58호~1416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4164호~14165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카페 이용자가 방송 프로그램 ●●●●●●●●●●●●●●의 일부를 복

제하여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내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프로그램 총 90분 중 특정 건물을 소개한 6분 30초 분량의 영상물에서 음향을 제거하고 영상만을 편집하였음. 게시물 작성자에 따르면 촬영 대상 건축물은 게시자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추정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4164호~1416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해당 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방송물 일부를 제3자가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인용·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해당 건은 시공자가 작성한 사안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B 위원: 권리자의 원저작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건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허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허락 없는 이용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특별한 보호필요

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권리자가 이러한 이용형태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 D 위원: 해당 사안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함.  
하지만 향후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에 애매한 건이 상정된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표현 자유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A 위원: 시정권고 제도가 행정지도이긴 하나 이같은 행정작용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임.
- B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경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부결하였음. 인용 또는 공정이용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정권고하는 것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64호~14165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166호~14182호는 민원인 3명이 각각 신고한 건으로, ◎◎◎ 이용자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제공한 사안임.  
특히 안전번호 제2021-14174호~14177호 게시물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심의에 자주 상정되었던 블로그와 동일한 블로그로 보임. 하지만 자

세히 살펴보면 게시자 ID는 변경되었음. 이전 ID로 검색해보니 해당 OSP 약관 위반으로 이용 정지되었음. 이에 새로운 ID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4166호~1418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D 위원: 영상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B 위원, C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66호~141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183호~1459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

입.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드라마 '설국열차'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14255호는 2021. 1. 25.부터 현재까지 미국 TNT와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설국열차' 시즌 2에 관한 건임.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351호는 넷플릭스 독점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549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시즌 1 제1화부터 제10화까지 전체분량을 자막(srt 파일)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4183호~145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4183호~1459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156호 및 제2021-14164호~1416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4157호~14163호 및 제2021-14166호~1459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05호~371호 67개 안전 중 53개 안전은 가결하고, 14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2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개 안전(1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